

브라질 사법제도

국 가 개 요

1. 국명 : 브라질연방공화국(Federative Republic of Brazil)
2. 수도 : 브라질리아(Brasilia, 303만명)
3. 인구·면적 : 2억1,239만명(2019년), 851만km²(한반도의 약 37배)
4. 공용어 : 포르투갈어
5. 1인당 GDP : 9,821불(2017년)
6. 독립일 : 1822.9.7.(포르투갈로부터)
7. 정부형태 및 의회 : 대통령중심제, 양원제

1. 헌법 개정

- 1824. 3. 25. 헌법 제정(제국헌법)
- 1891. 2. 24. 헌법 개정(대통령제와 연방제 채택)
- 1937. 11. 10. 헌법 개정을 통해 연방최고법원의 명칭을 Corte Suprema에서 현재의 Supremo Tribunal Federal(STF)로 변경하고, 사법부의 구성을 연방최고법원, 주법원, 군사법원으로 함
- 1967. 3. 15. 헌법 개정(가스펠루 브랑꾸 장군에 의한 군사정부)
- 1988. 10. 5. 헌법 개정(현행 헌법)

2. 연방최고법원

- 연방최고법원은 브라질 법원조직법상 규정된 최상위의 법원임
- 그 외에 브라질의 법원은 일반법원과 특별법원으로 구성됨
 - 특별법원의 경우 군사법원, 노동법원, 선거법원이 있음
 - 일반법원의 경우 연방법원과 주 법원이 있음
- 대법관(Ministro)은 11인으로 구성됨

- 대법관은 연방상원의원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
- 대법관의 자격은 35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, 법적 지식과 도덕적 명망을 갖춘 자이어야 함
- 대법관의 정년은 75세이며, 임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임하지 않는 이상 정년까지 재직함
- 연방최고법원장과 부원장의 임기는 2년이고, 연방최고법원장과 부원장은 대법관들의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되며 연임은 금지됨
- 대법관의 보수는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높으며,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직자 보수의 상한을 정함

3. 헌법재판에 관한 연방최고법원의 권한

□ 추상적 규범통제

- 위헌직접소송(Ação Direta de Inconstitucionalidade, ADI)
 - 브라질 연방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연방 또는 주 법률의 위헌여부를 제기함
 - 청구권자로는 대통령, 연방상원의 상임위원회, 연방하원의 상임위원회, 주입법회의의 상임위원회, 주지사, 검찰총장, 브라질변호사회 연방위원회, 연방의회에 대표를 보유한 정당, 노사단체연합이 있음
- 부작위위헌직접소송(Ação Direta de Inconstitucionalidade por Omissão, ADO)
 - 위헌직접소송 중에서 특별히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를 제기함
- 합헌확인소송(Ação declaratória de constitucionalidade, ADC)
 - 법률의 헌법합치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소송
- 헌법근본원리불이행쟁송(Arguição de Descumprimento de Preceito Fundamental, ADPF)

- 연방헌법 발효 이전의 법을 포함하여 공권력의 행위로 헌법의 근본 원리에 위배되는 경우에 청구함

□ 구체적 규범통제

- 구체적 사건에서 적용되는 규범의 위헌여부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다룰 수 있고, 나아가 그 판결에 대한 헌법 위반이 문제될 경우에 연방최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, 브라질의 구체적 규범통제는 분산적 통제 및 사후적 통제가 혼합된 방식임
- 청구권자로는 소송당사자, 소송참가자로 인정된 제3자, 검찰의 대리인이 있음

○ 인신보호명령(Habeas corpus)

- 이동의 자유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구

○ 보호명령(Mandado de segurança)

- 인신보호심판이나 정보보호심판을 통해 보호되지 않으나, 헌법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침해가 있는 경우에 청구

○ 부작위명령(Mandado de injunção)

- 권리의 행사가 시행규범의 결여에 원인이 있는 경우에 청구

○ 정보보호명령(Habeas data)

-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기록 또는 데이터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고자 청구

□ 권한쟁의심판

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, 지방자치단체 상호간, 행정부와 사법부, 사법부 내의 권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청구

□ 외국과의 분쟁관할

-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와 연방정부, 지방정부(주, 연방특구), 직할령 (Território)과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 청구
- 또한 외국정부에서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에 대해서도 연방최고법원이 관할권을 가짐

□ 고위공직자에 대한 형사관할

대통령, 부통령, 연방의회의원, 연방최고법원 대법관, 검찰총장 등의 형사범죄에 대한 판단

4. 심리 및 결정

- 위헌직접소송, 합헌확인소송에서의 위헌판단은 대세효(erga omnes), 소급효(ex tunc),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에 대한 기속력 (efeito vinculante)을 가짐
- 구체적 규범통제에서 위헌선언은 소송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 (소급효)을 가지며,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을 기속하지 않음
 - 법률이 일반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기 위해서 연방상원에 의한 결의(resolução)가 요구됨

5. 연락처

- 주소 : Praça dos Três Poderes
Brasília - DF - CEP 70175-900
- 전화번호 : +55 61 3217 3000
- 이메일 : ain@stf.jus.br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stf.gov.br/>

※ 출처 : 브라질 헌법

노호창, “브라질의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”, 헌법논총 제27집,
2016.

조희문, “브라질의 헌법재판제도”, 외법논집 제34권 제4호,
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0. 11.

(2019. 4. 작성)